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통보 지침]

# 목 차

| I. 개 요 ·································· |
|---|
| 1. 웹 접근성 품질인증 소개 1                        |
| 2. 접수 및 방법 2                              |
| 3. 심사 종류 9                                |
| 4. 심사 절차 11                               |
| 5. 심사 방법 및 환경 12                          |
|   |
| II. 인증심사 기준 ······ 18                     |
| 1. 전문가심사 기준 18                            |
| 2. 사용자심사 기준 37                            |
|   |

# I. 개 요

## 1. 웹 접근성 품질인증 소개

####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란?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기존 PC웹을 중심으로 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에 있어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모바일 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 모바일 웹 접근성은 모바일 웹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및 인증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12.2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 2013.12.23.,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품질인증"이란 신청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 4.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인증심사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서면 심사 및 기술가심사와 사용자심사 또는 현장방문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 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2. 접수 및 방법

## □ 접수 대상

- 접수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로 반드시 웹사이트 소유 기관 담당자가 신청해야 하나 담당자 동의하에 개발사가 신청 가능하며 개발사가 신청 시 증빙할 수 있는 대리 신청서 첨부
  - ※ 홈페이지가 아닌 웹 페이지로 구현된 모듈, 웹 애플리케이션 등 웹 솔루션은 접수 불가

# □ 접수 방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개별 신청 ※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참조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

| 인증기관                     | 홈페이지               | 기본 신청 서류                  |
|--------------------------|--------------------|---------------------------|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www.wa.or.kr       |                           |
| 웹와치(주)                   | www.webwatch.or.kr | ▶ 신청서 1부<br>▶ 자가진단 결과서 1부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br>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www.kwacc.or.kr    | ▶ 기타 증빙 서류                |

## □ 심사 대상 사이트의 범위 및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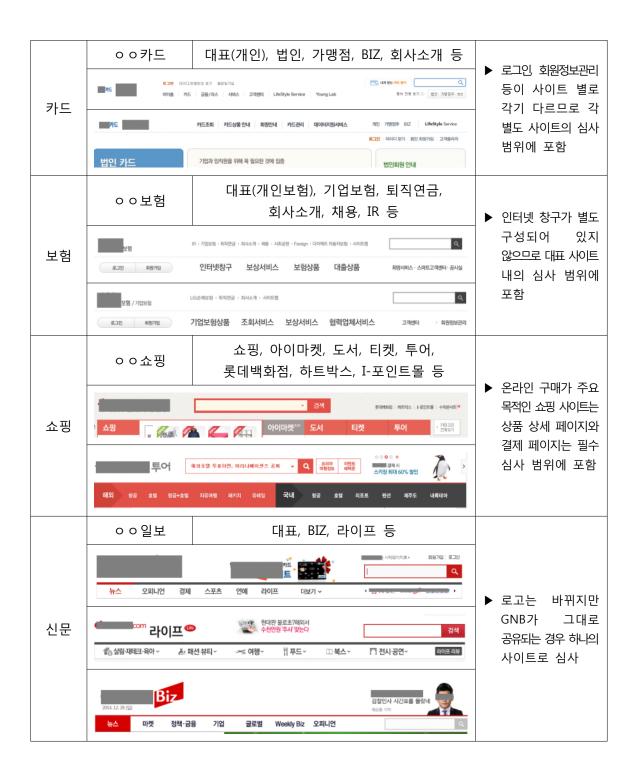
- 심사 대상 사이트 범위의 기준
  - 대메뉴(GNB: Global Navigation Bar)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동일한 사이트명 (로고 등)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구분하며, 대메뉴가 새롭게 구성되고 해당 영역과 콘텐츠 및 서비스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 별도의 접수 대상 사이트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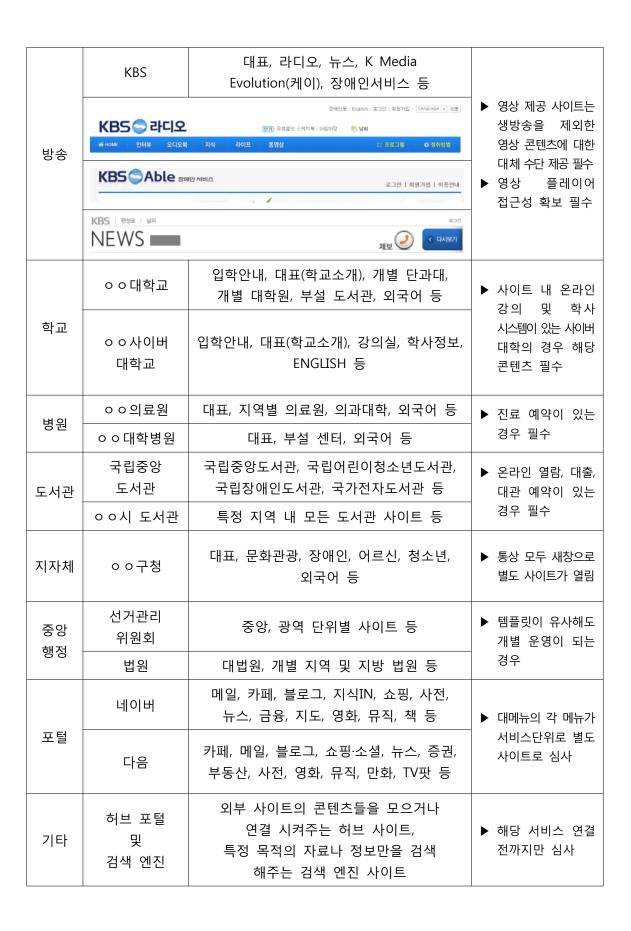
#### $^-$ < 별도 사이트 구분 기준 추가 설명 > $^-$

- ▶ 콘텐츠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경우"란 별도의 대메뉴(GNB)를 가지면서 기존 사이트의 콘텐츠와 독립적인(기존 사이트의 주요기능이 아닌)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
  - ☞ '별도 사이트 예시 및 심사 범위 참고사항' 표 참고
- ▶ 별도로 구성된 대메뉴 및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별도 사이트는 인증의 최소 단위로 별도 사이트 미만의 규모는 인증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
  - ☞ '별도 사이트 예시 및 심사 범위 참고사항' 표 참고
- ▶ 로그인 및 회원정보관리 등과 같은 필수 공통 사이트(서비스)는 별도 사이트 이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심사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 별도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위와 같은 필수 공통 사이트(서비스)를 포함해 인증 받은 경우라도 이후 별도 사이트 심사에서 중복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됨
- ▶ 외국어 사이트의 경우 대메뉴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언어별로 별도 사이트에 해당

#### <별도 사이트 예시 및 심사 범위 참고사항>

| 구분 | 운영기관  | 별도사이트   | 비고   |
|----|---|---|--|
| 은행 | O O 은 행  개인 로그로 광인되었는데 조희 이제 중  금융상품 로그린 공인임등선 수천상품 예금 만드 | 개인, 기업, 금융상품, 카드, 은행소개,<br>고객광장, 펀드센터, 론센터, 외환센터,<br>공인증센터, 퇴직연금 등<br>개인 개업 공용상품 키도 전체서비스 * 원터지연성이제 Q<br>개인 기업 공용상품 키도 전체서비스 * 원터지연성이제 Q<br>개인 기업 공용상품 카드 전체서비스 * 원터지연성이제 Q | ▶ 로그인 공인인증센터<br>등 필수공통서비스는<br>다른 별도사이트<br>에 대해서도 중복<br>심사 범위에 포함 |





- 웹사이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 콘텐츠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분이 불가하므로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
- 웹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솔루션(S/W)에 의한 기능들도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E-book, E-learning, 좌석 및 티켓 예약시스템, 증명서 발급, 문서 출력(인쇄), 공인인증서 모듈 등)
- ※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접근성이 확보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동등한 정보와 기능을 대체콘텐츠 또는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야 함

#### <심사 대상 외부 콘텐츠 기준>

- ▶ 공인인증, 각종 인증(실명, 휴대폰, 신용카드 등), 통합로그인, 국민신문고, 새올 행정 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제3자 제공 콘텐츠 등이 해당되며, 링크로 연결된 단순한 외부 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음
- ▶ 심사 대상 사이트의 주요 목적에 해당되는 외부 콘텐츠는 콘텐츠 제공 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사이트의 심사 범위에서 예외 될 수 없음
  - ☞ 쇼핑몰의 결제 모듈, 보험이나 전자정부의 증명서 출력 솔루션, 이러닝의 교육 동 영상, 병원이나 박물관의 예약 솔루션 등
- 단,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동시 만족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나 수정 권장 처리 될 수 있음
- ① 자체 수정이 불가능하고,
- ② 개선 요청 효력이 불분명하면서
- ③ 사이트의 주요 목적 콘텐츠가 아닌 부가적 목적의 콘텐츠인 경우
  - 예) 해외 SNS 등과 같은 외부 연동 API나 프레임 페이지의 경우가 부가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함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체 수단 제공 시, 웹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방식의 대체 수단은 인정하지 않음
  - 예) 예약/예매 기능에 대한 전화 예약/예매 대체는 웹 접근성 대체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수의 별도 사이트에 대한 인트로 페이지, 통합로그인, 검색 서비스 등 공통영역이라 하더라도 각 사이트마다 중복으로 심사

- ※ 공통영역은 중요한 영역으로 중복 평가될 수 있으며, 상이한 평가결과 방지를 위해 중복 심사함
- 사용자 게시물, 멀티미디어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입력 시 접근성 준수 기능 제공 또는 사전안내를 전제로 심사 범위에서 예외처리
  - ※ 게시판의 대체 수단 제공 기능이 없더라도 게시물 내에서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대신하는 본문을 넣어주는 등 구체적인 접근성 준수 설명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전안내로 간주
  - 예) 게시판의 대체 텍스트 제공 수단

#### 이미지 조회 등록

| 업무구분   | 업무선택▼ |                     |
|--------|-------|---------------------|
| 이 이미지명 | 이미지에  | 대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십시오.   |
| O 설명 * | 이미지에  |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성해주십시오. |
| 이미지정부  |       | 첨부파일                |

예) 게시판의 자막 제공 수단 적용

#### 동영상 등록

| 업무구분    | 업무선택▼                    |
|---------|--------------------------|
| 저목      |                          |
|         |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
| 동영상원고 * |                          |
|         |                          |
|         |                          |
| 동영상첨부   | 첨부파일                     |

#### ○ 심사 대상 제한

-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위배 등의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는 신청 불가
- 플랫폼,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그룹웨어, 이메일시스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결제모듈, 공인인증 솔루션, 본인 확인 인증 모듈 등 웹사이트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단독 신청 불가

- 언어별 사이트, 전문 정보 사이트 등 난이도가 높은 심사의 경우, 당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 심사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 계정 및 테스트 데이터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및'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현장심사가 불가피함에도 현장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 현장심사 대상인 사이트임에도 현장심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 □ 심사 대상 사이트의 페이지 산정 기준

- 페이지 산정 절차
  - ① 사이트 규모 유형 적용을 위한 페이지 산정은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 내의 페이지 수가 적절한지 검토
  - ② 규모가 상이한 경우 IA(Information Architecture) 구조 또는 메뉴구조 및 사이트맵을 참고하여 페이지 수를 산정
  - ③ 산정된 해당 규모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규모유형에 따라 심사 진행
- 페이지 산정 기준
  - ① URL주소를 기본으로 1페이지로 산정한다.
  - ② 동적페이지, 레이어팝업 등의 콘텐츠영역은 원칙상 웹페이지 본문(이하본문)과 함께 1페이지로 산정하나, 동적인 변경 영역 또는 레이어 팝업콘텐츠가 본문을 차지하는 수준인 경우 2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시 1) 주식, 중계 정보 등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변경되는 페이지의 경우
      - → 일부 영역이 변하는 페이지는 1페이지로 산정하되 본문을 차지하는 수준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시 2)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제공되는 다수의 탭메뉴를 제공하는 경우
      - → 메인페이지의 공지사항과 같이 일부영역에 적용된 탭메뉴 콘텐츠는 본문과 함께 1페이지로 산정하나 서브페이지 등의 탭메뉴 콘텐츠와 같이 본문을 차지하는 수준인 경우 2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시 3) 새창 또는 레이어 팝업 형태로 콘텐츠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 일부영역은 본문과 함께 1페이지로 산정하나 본문을 차지하는 수준의 레이어 팝업 콘텐츠는 2페이지로 산정한다.
  - → 도로명 주소 입력, 회원가입 등과 같이 단계별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2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시 4) 검색 조건 입력에 따른 통합검색 결과 목록은 1페이지로 산정한다.
- ③ 게시판의 경우 게시물 수가 아닌 목록, 내용, 쓰기를 각 1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시 1) 공지사항, 보도자료 게시판 등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는 게시판은 2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시 2) 자유게시판, 칭찬게시판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게시판은 3페이지로 산정한다.
  - 예시 3) XML 문서에 다양한 XSL(스타일)을 적용하는 전자문서 등은 다양하게 생성되더라도 일반 게시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심사 종류

## □ 신규심사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주기 이후 획득하기 위한 심사
  - 각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3명 및 사용자심사원 3명(전맹, 저시력, 상지 또는 뇌병변)

#### ─ <신규 심사 대상 사이트> -

-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사이트
-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갱신 심사에서 불합격한 사이트
- ▶ 인증 유효기간 중 웹사이트 변경율에 의해 신규 심사 대상이 되는 사이트

## □ 갱신심사

○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로 인증 유효기간(1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심사

-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1명 및 사용자심사원 1명(전맹, 상지 또는 뇌병변)
- 샘플링 페이지 수(과업 수)는 신규심사의 50%이상 권장
- 갱신은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로는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함
  - ※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1개월을 넘기도록 비용 입금 등의 이유로 심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갱신 조건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신규심사대상으로 전환됨
  - ※ 인증심사완료일과 상관없이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으로 한다.

#### ─ <갱신심사 대상 사이트> -

-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하는 사이트
- ▶ 인증 유효기간 중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신청하는 사이트

## □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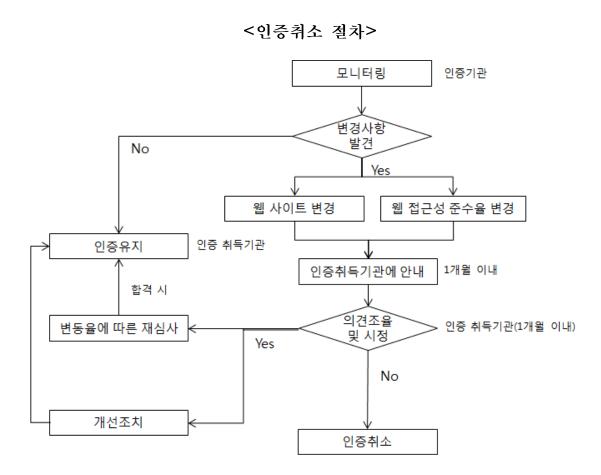
○ 인증 사이트에 대해 인증기관이 유효기간(1년) 중 6개월 이내 웹사이트 변동 및 웹 접근성 수준을 점검하는 검사

<웹사이트 변동률 결과에 따른 심사 전환>

| 사이트 변동률         | 심사전환         | 인증유효기간         | 비고 |
|-----------------|--------------|----------------|----|
| 20% 이하          | 모니터링으로 수정 안내 | 기존 인증기간 유지     | 무료 |
| 20% 초과 - 50% 이하 | 갱신심사로 전환     | 갱신심사 인증일로부터 1년 | 유료 |
| 50% 초과          | 신규심사로 전환     | 신규심사 인증일로부터 1년 | 유료 |

- ※ 변동률은 인증 당시의 심사대상 페이지 중 변경페이지의 비율로 산정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마크 유효기간 내 인증마크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없음(법적사항)

- 기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범위,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 4. 심사 절차

○ 심사 절차는 크게 접수, 서면심사, 기술심사, 인증으로 구성되어 주요 절차는 모든 인증기관이 동일하나 접수방식, 수수료, 보고서, 심사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인증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 ① 접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 구분 신청
- 신청 사이트 담당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하에 대리 신청
- ② 서면심사
  - 신청서 및 자가진단 결과서 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접수 여부 결정
  - 허위 기제, 정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반려
  - 서면심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접수 완료 안내 및 심사 수수료 납부

#### ③ 기술심사

-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심사 진행
-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로 진행
- 1차 심사 후 경미한 오류로 불합격 시 수정/보완 기회 부여
- 수정/보완 후 2차 심사 진행※ 2차 심사 진행 시 1차 심사 페이지의 20% 이상 변경하여 심사 가능
-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에서 합격 시 인증 절차 진행 \*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 모두 합격해야 함

#### ④ 인증

- 기술심사 합격시 인증 절차 진행
- 인증일 확정 및 인증 통보
-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
  - ※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는 심사 받은 사이트에만 부착할 수 있음

# 5. 심사 방법 및 환경

## □ 서면심사

- 심사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심사
- ① 자가진단 결과
  - 자가진단은 자동진단도구 최신버전으로 실시하며, 10페이지에 대해서 자동 진단도구로 가능한 항목 준수율이 95%이상일 경우에만 심사 신청 가능

| 4대원칙                        | 검사항목 (24개)   |   |
|-----------------------------|--|---|
| 인식의 용이성<br>(Perceivable)    | <ol> <li>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li> <li>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li> <li>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li> </ol>                             | <ul><li>② 자막제공</li><li>④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li><li>⑥ 자동재생 금지</li></ul>                      |
| 운용의 용이성<br>(Operable)       | <ul> <li>⑦ 컨텐츠 간의 구분</li> <li>⑨ 초점 이동</li> <li>⑪ 응답시간 조절</li> <li>⑬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제한</li> <li>⑮ 제목제공</li> </ul> | (8) 키보드사용 보장(PC웹) (2) 누르기동작지원(모바일웹) (1) 조작기능 (1) 정지 기능 제공 (4) 반복영역 건너뛰기 (6) 적절한 링크텍스트 |
| 이해의 용이성<br>(Understandable) | ① 기본 언어 표시<br>① 콘텐츠의 선형화<br>② 레이블 제공   |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20)     표의 구성       (22)     오류 정정                      |
| 견고성(Robust)                 | ② 마크업 오류 방지  | ②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단, 진단도구 오류 등으로 인해 자가진단을 할 수 없거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②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증명서류 제출이 올바른지 확인
- 신청 사이트 규모, 구분 등 정보가 올바르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 심사 반려

# □ 기술심사

- 전문가심사
  - 심사 사이트의 주요목적 콘텐츠 및 다양한 템플릿 페이지를 선정하여, 해당 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심사
  - ① 사이트 구분별 전문가심사 샘플링 페이지 선정 최소 기준

## <전문가심사 샘플링 페이지 선정 최소 기준>

| 구<br>분 | 전문가심사<br>샘플 페이지 수    | 비고  |
|--------|----------------------|---|
| 신<br>규 | 2.5×√전체페이지수<br>이상 권장 | ▶ 전문가심사는 전체페이지 수에 따라 각 샘플 페이지 수<br>공식으로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갱<br>신 | 신규의 50% 이상 권장        | ▶ 사용자심사는 10개 이상의 샘플 과업 수 선정 권장                              |

#### ② 전문가심사 샘플링 페이지 선정 기준

- 심사 페이지 선정시 아래'심사 페이지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가입, 뱅킹, 조회, 검색, 게시물 작성, 서비스 가입 등과 같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콘텐츠는 단계별 페이지를 되도록 모두 선정

#### <심사 샘플링 페이지 선정 시, 우선순위 유형>

| 우선순위                           | 세부유형   |
|--------------------------------|--|
| 메인페이지                          | ▶ 주 메뉴가 있는 메인 페이지<br>예) 도입부 페이지(인트로)가 아닌 GNB가 있는 메인 페이지  |
| 로그인 및 회원 가입                    | <ul><li>▶ 로그인 페이지</li><li>▶ 회원 가입 단계별 페이지</li><li>▶ 회원 정보변경 단계별 페이지</li></ul>  |
| 통합검색 및 사이트 맵<br>(내비게이션 지원 페이지) | <ul><li>▶ 사이트 내 통합 검색 및 사이트 맵</li><li>▶ 기타 사용자 내비게이션 지원 기능 또는 콘텐츠 페이지</li></ul>  |
| 목적 서비스(기능)                     | ▶ 해당 사이트의 주요 목적 서비스(기능) 전체 과정 페이지<br>예) 금융 사이트의 조회, 이체, 펀드, 대출, 보험, 공과금 등<br>주요 대표 핵심 서비스의 과정 전체, 쇼핑 사이트의 상품상세,<br>주문, 결제 과정 전체, 전자정부 사이트의 민원 신청 및 발급<br>과정 전체 |
| 안내 및 정보 제공                     | ▶ 해당 사이트만의 안내 및 정보 페이지 예) 기관 소개, 서비스 안내, 보험 약관, 공지사항, 공고 등   |
| 자료 제공                          | ▶ 해당 사이트만의 자료 제공 페이지 예) 사진 게시판, 파일 게시판 등   |
| 문제 해결 및 소통                     | ▶ 사이트 이용 방법 안내, 문제 해결 및 소통 방법 제공 페이지<br>예) 웹 접근성 안내, 이메일 문의, 민원 또는 소통 목적 게시판, 직원<br>및 담당자 연락처 페이지, 고객센터 전화 및 위치 안내 페이지   |
| 다양한 콘텐츠 및 템플릿                  | ▶ 기타 상위 우선순위와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및 템플릿 페이지  |

## ③ 전문가심사원 투입 기준

-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심사원이 심사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 사용자심사

- 심사대상 사이트의 주요목적 콘텐츠 및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과업을 설정하고 이를 장애유형별 사용자의 이용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
- ① 심사대상 사이트 구분별 심사 과업 수 최소 기준

#### <사용자심사 샘플링 과업 선정 최소 기준>

| 구<br>분 | 사용자심사 샘플<br>과업 수 | 비고   |
|--------|------------------|--|
| 신<br>규 | 10개 이상 권장        | ▶ 사용자심사는 10개 이상의 샘플 과업 수 선정 권장<br>▶ 모바일 웹은 PC웹의 50%로 적용 권장 |
| 갱<br>신 | 신규의 50%이상<br>권장  | (단, 운영체제별로 각각 평가)<br>ex) i-OS 5개, Android 5개               |

- ② 사용자심사 과업 선정 기준
  - 심사대상 사이트의 특성 상 중요한 서비스와 기능 중심으로 중복 없이 과업 선정
- ③ 사용자심사원 투입 기준
  - 전맹 시각장애, 저시력 시각장애, 지체(상지) 또는 뇌병변 장애의 3가지 장애 유형 심사원이 독립적으로 심사 진행

#### ○ 현장심사

-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이트에 대해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심사
  - ※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
-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외부에서 심사할 수 없는 금융, 전자정부 사이트
  - ※ 심사원이 계정정보가 있더라도 심사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심사 진행
- ② 외부로 테스트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③ 인증기관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현장심사 제한 조건
- ① 운영 중인 서버와 기능 및 콘텐츠가 다른 테스트 또는 개발 서버인 경우
- ② 개발 과정 중 '설계', '구축' 단계와 같은 '시험' 단계 이전인 경우
- ③ 독립적 심사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심사 환경

# ○ 전문가심사 웹 브라우저 및 버전 기준

| 구분    | 웹 브라우저                                     | 비고  |
|-------|--|---|
| PC 웹  | IE(Internet Explorer)<br>최신 버전             | ▶ 신청인이 특정 브라우저 버전을 제시하는 경우 하<br>위버전으로 평가 가능(IE9버전 이상) |
| 모바일 웹 | 모바일 환경으로<br>User Agent 변경 가능한<br>브라우저 최신버전 | ▶ User Agent 설정은 최신 OS 설치가 가능한 기기                     |

## ○ 사용자심사 보조기기(스크린리더) 기준

| 구분   | 보조기기 (스크린리더)                                  | 비고  |
|------|---|---|
| PC 웹 | 센스리더 최신버전 또는<br>죠스, NVDA 등 최신버전               | <ul> <li>▶ 기기 및 OS는 가장 최적화 된 접근성<br/>환경을 제공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li> <li>▶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보조기기에서<br/>과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li> </ul> |
| 모바일  | i-OS Voice Over, Android Talk<br>Back 등의 최신버전 | <ul> <li>▶ 기기 및 OS는 가장 최적화 된 접근성<br/>환경을 제공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함</li> <li>▶ 두 가지 모두 보조기기에서 과업 수행이<br/>가능해야 함</li> </ul>       |

# ○ 사용자심사 모바일 단말 기준

| 단말            | 모바일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 비고                |
|---------------|---|-------------------|
| 최신iOS가 설치된    | iOS 및 Safari(기본 브라우저) 최신 버전                           | Voiceover 사용      |
| 기기            | 100 X 501011(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Veleceve: 148     |
| 최신Android OS가 | Android 및 Android(기본 브라우저)                            | Talkback 등의 최신 버전 |
| 설치된 기기        | 최신 버전   | Talkback 6의 되는 미년 |

# Ⅱ. 인증심사 기준

# 1. 전문가심사

# □ 전문가심사 합격 기준

○ 항목별 준수율 : 24개의 검사항목 모두 평균 준수율 95%이상

<항목별 준수율 예시>

| 항   | 항목 페이지          |   |   | 3 | 4 | 5 | 6 | 7 | 8 | 9 | 10 | 지때 수준   | 항목별<br>준수율 |
|-----|-----------------|---|---|---|---|---|---|---|---|---|----|---------|------------|
| 1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2   | 자막 제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3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4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5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6   | 자동재생 금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7   | 콘텐츠 간의 구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8-1 | 키보드 사용 보장(PC웹)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8-2 | 누르기 동작 지원(모바일웹)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9   | 초점 이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0  | 조작 가능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1  | 응답시간 조절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2  | 정지 기능 제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3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4  | 반복영역 건너뛰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5  | 제목 제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6  | 적절한 링크 텍스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7  | 기본 언어 표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8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19  | 콘텐츠의 선형화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20  | 표의 구성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21  | 레이블 제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22  | 오류 정정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23  | 마크업 오류 방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24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0 | 100%       |

# <심사 지표 결과 표시 및 기준>

| 결과 구분  | 지표 기준  | 비고       |  |  |
|--------|--------|----------|--|--|
| 하셔(이)  | 합격(O)  | 오류 없음    |  |  |
| 합격(O)  | 권고(O)  | 권고 사항 있음 |  |  |
| 불합격(X) | 불합격(X) | 오류 있음    |  |  |

# □ 전문가 심사 검사 항목

| 번호  | 세부평가항목          | 준수율 산정 방식   | 비고                                  |
|-----|-----------------|---|-------------------------------------|
| 1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심사대상페이지내의 $\left(\frac{\hbox{준수한 페이지수}}{\hbox{페이지수}} \times 100\right)$ |                                     |
| 2   | 자막 제공           | 심사대상페이지내의 $\left(rac{준수한콘텐츠수}{콘텐츠수} 	imes 100 ight)$                   | 샘플링 페이지 수<br>이내로 멀티미디어<br>제공 페이지 수집 |
| 3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                                     |
| 4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                                     |
| 5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                                     |
| 6   | 자동재생 금지         |   |                                     |
| 7   | 콘텐츠 간의 구분       |   |                                     |
| 8-1 | 키보드 사용 보장(PC웹)  |   |                                     |
| 8-2 | 누르기 동작 지원(모바일웹) |   |                                     |
| 9   | 초점 이동           |   |                                     |
| 10  | 조작 가능           |   |                                     |
| 11  | 응답시간 조절         |   |                                     |
| 12  | 정지 기능 제공        | 심사대상페이지내의 $\left(\frac{준수한 페이지수}{페이지수} \times 100\right)$               |                                     |
| 13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 B가대 8 대 기가 대기   페이지 수   |                                     |
| 14  | 반복영역 건너뛰기       |   |                                     |
| 15  | 제목 제공           |   |                                     |
| 16  | 적절한 링크 텍스트      |   |                                     |
| 17  | 기본 언어 표시        |   |                                     |
| 18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   |                                     |
| 19  | 콘텐츠의 선형화        |   |                                     |
| 20  | 표의 구성           |   |                                     |
| 21  | 레이블 제공          |   |                                     |
| 22  | 오류 정정           |   |                                     |
| 23  | 마크업 오류 방지       |   |                                     |
| 24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각 검사항목에서 검사   |                                     |

# □ 지표별 전문가심사 기준

|             | 공통 사항  |  |  |  |  |
|-------------|--|--|--|--|--|
| 중복 감점<br>기준 | <ul> <li>◎ 공통영역 등에서 동일한 콘텐츠가 여러 페이지에서 감점되는 경우 1페이지만 감점</li> <li>예) 푸터의 주소 대체 텍스트 오류</li> <li>◎ 하나의 오류가 다양한 검사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감점</li> <li>예) onfocus=this.blur()의 경우 : 검사항목 7,8,16 동시 감점</li> <li>※ 반드시 동시에 오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동시감점 적용</li> </ul> |  |  |  |  |
| 문법준수        | <ul><li>◎ 심사가이드에서 설명되지 않은 경우 문서타입의 문법을 준용</li><li>- 심사가이드에서 제시되지 않은 각 항목별 심사는 문서타입에 따른 문법에 따른다.</li></ul>  |  |  |  |  |
| 명도대비(모바일)   | ◎ 명도대비평가는 <a href="http://troy.labs.daum.net">http://troy.labs.daum.net</a> 에서 보이는 화면을 CCA로 측정한다.  |  |  |  |  |

##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항목 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지표<br>번호   | 1   | 지표명  | 적절한 대체텍스트 제공  |  |  |
|--|---|--|---|--|--|
| 준수 기준  |   |  | ◎ 의미 있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에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img/> , <input type="image"/> 등 이미지 요소에 대해 alt 속성을<br>1-1 alt속성은 선언되었으나 그 내용이 img의 내용을 대체할 수 없는 경<br>표기되어 의미가 변경된 경우 |  |   |  |  |
|  | 1-2   | ○ 불릿이나 배경이미지 등 의미 없는 이미자<br>불필요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지에 alt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공백이 아닌  |  |  |
|  | 1-3   | <longdesc> 속성을 이용했으나 파일이<br/>된 파일의 내용이 longdesc속성을 부여<br/>하기 어려운 경우</longdesc>   | 연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longdesc로 연결<br>한 img가 가진 내용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                      |  |  |
|  | 1-4   | ○ <area/> 요소나 <longdesc> 속성을 사<br/><img/> 요소 자체에 alt 속성을 적절하게</longdesc>   | 용하였으나 area나 longdesc의 서술 대상인<br>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오류<br>유형   | 1-5   | ○ 이미지맵을 사용하여 조직의 관계나 프로세스 등 복잡한 이미지의 내용을 다<br>스트로 설명하였으나, 순서가 맞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여 원래의 이미지의 다<br>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1-6   | ○ img 요소의 대체텍스트를 title만으로 저  | 공하는 경우  |  |  |
|  | 1-7   | ○ QR코드 등과 같이 시각적인 정보만으로 목<br>등을 대체텍스트 또는 설명, 링크 등으로 7  | 확인이 가능한 콘텐츠(기능)의 <del>이동 주소</del> 정보<br>데공하지 않은 경우                          |  |  |
|  | 1-8   | <ul><li>배경 이미지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하지 않은 경우</li></ul>  | 고 있으나 이를 텍스트 형태의 정보로 제공   |  |  |
|  | 1-9   | <ul><li>배경 이미지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되었으나, 그 텍스트 정보를 보조기기에서</li></ul>   | 하고 이를 텍스트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고<br>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
|  | 1-10  | <ul> <li>사용자가 직접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 콘<sup>I</sup><br/>해당 콘텐츠에 대한 대체 콘텐츠를 입력</li> </ul>  | 텐츠를 등록할 때(예: 게시판에 콘텐츠 등록),<br>후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텍스트 정보와 대체텍스트가 동일하지 않더텐츠를 인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QR코드, CCTV,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HA) 등 실시간 영상체텍스트는 콘텐츠의 용도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제공     용도나 목적만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서는 음성, 캡챠, 문자 안내 등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찾아오시는 길, 뉴스 사진과 같은 본문 이미지에 대하여 대체텍스트제공하고, 본문에 설명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해 IR(Image Replacement)기법을 사용하고 그 명은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는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br> (CAPTCHA) 등 실시간 영상 등에 대한 대<br>한 수 있도록 제공<br>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CAPTCHA)에 대해<br>수단을 제공해야 함<br>한 이미지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빈값으로<br>한 것으로 인정 |   |  |  |

항목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지표<br>번호 | 2   | 지표명   | 자막 제공   |  |  |
|----------|-----|---|---|--|--|
| 준수 기준    |     | ◎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2-1 |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체수단(자막, 원고, 즉   | 수화 중 하나 이상)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오류       | 2-2 |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대체 수단의 내  | 용을 불충분 또는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  |  |
| 유형       | 2-3 | <ul><li>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다하지 않은 경우</li></ul>   | ○ 사용자가 등록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관리자가 대체 수단 입력 기능을 제공<br>하지 않은 경우   |  |  |
| 세부       | 설명  | 여야 함  • 모바일 웹의 경우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br>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원고를 제공할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회<br>것을 권장 |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br>으로 인정<br>가 대상에 포함(단,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br>수한 것으로 인정)<br>이야 함<br>고, 대체 콘텐츠(자막, 대본, 수화)와 영상을<br>라이디어 콘텐츠 인접한 위치에서 제공하<br>음성 콘텐츠를 지양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  |  |

항목 3.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3   | 지표명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
|----------|-----|---|---|--|
| 준수       | 기준  | ◎ 색을 배제하여도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오류<br>유형 | 3-1 | ○ 색상만으로 내용을 구분하거나 인식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 차트, 지도, 필수 입<br>력항목 등)를 제공한 경우   |   |  |
| 세부       | 설명  | <ul> <li>패턴, 명암(7:1 이상) 등으로 색에 관계없어 것으로 인정</li> <li>차트 등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 기반으로 같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색상만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용자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li> </ul> | 그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과<br>으로 인정<br>선택하여 알 수 있거나 주변정보를 통해<br>한 것으로 인정 |  |

항목 4.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4   | 지표명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  |
|----------|-----|---|--------------------------|--|--|
| 준수       | 기준  | ©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약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오류       | 4-1 | ○ 색, 크기, 모양, 방향 등 지시사항을 시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                          |  |  |
| 유형       | 4-2 | ○ 소리 등 지시사항을 청각정보로만 제공한 경우  |                          |  |  |
| 세부설명     |     | • 시각 및 청각을 테스트 하는 검사 콘텐츠<br>특수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                              | , 또는 시각, 청각을 통한 게임 콘텐츠 등 |  |  |

항목 5.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 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5   | 지표명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대비                 |  |  |
|---|-----|--|-------------------------------|--|--|
| 준수 기준   |     | ◎ 내비게이션(메뉴) 및 본문 콘텐츠에서 텍스트의 명도 대비가 4.5:1 이상이거나, 18pt<br>또는 굵은 14pt 이상에서 3:1 이상이거나,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콘텐츠는<br>3:1 이상일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5-1 | ○ 일반 텍스트의 경우 보통 크기(18pt 미만,<br>족하지 않은 경우   | 또는 굵은 14pt 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 |  |  |
| 오류  | 5-2 | ② 일반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크기가 18pt 이상, 또는 굵은 14pt 이상의 텍스 3: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                               |  |  |
|   | 5-3 |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 미만인<br>경우 4.5:1 이상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나, 18.66px 이상인 경우 3:1 이상을 만족하지<br>않은 경우(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  |  |
| ● 이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는 화면상에서 정보를 텍스트로 읽을 수 있경우를 말함(일반 텍스트 콘텐츠. 이미지로 만들어진 텍스트 콘텐츠 모두 프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없이 Windows에서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MacOSpx가 같음), 굵음의 여부와 상관 없이 14pt 이상은 3:1이상, 미만은 4.5:1이도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Windows의 표준 해상도: 96dpi, MacOS의 표준 해상도: 72dpi, Windows의 기준으로 실시)  ● 마우스 및 키보드 포커스에 의해 변경(Roll Over) 되는 경우 콘텐츠는 그 중 명도높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본문 콘텐츠에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이미지,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서식 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로 만들어진 텍스트 콘텐츠 모두 포함)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 18pt는 24px로 적용하며(MacOS는 pt와 lpt 이상은 3:1이상, 미만은 4.5:1이상의 명은 인정 MacOS의 표준 해상도: 72dpi, 평가는 Over) 되는 경우 콘텐츠는 그 중 명도 대비가 시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                               |  |  |

| 항목 6   | 항목 6.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                                    |  |  |  |
|--|---------------------------------------|--|------------------------------------|--|--|--|
| 지표<br>번호   | 6                                     | 지표명 자동재생 사용 금지                               |                                    |  |  |  |
| 준수 기준  |                                       | ◎ 소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br>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소리 콘텐츠를 사용            |  |  |  |
| 오류   | 6-1                                   | ○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  |  |  |
| 유형 6-2 이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으로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형  |                                       |  |                                    |  |  |  |
| 자동 소리 외에도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만으로 3초 이상 배경음 등 재생되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소리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이더라도 제어 수단이 회 최상단에 제공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페이지 내에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 콘텐츠외 아무런 콘텐츠도 없는 경우는 것으로 인정 |                                       |  | 정<br>3초 이상이더라도 제어 수단이 페이지의<br>! 인정 |  |  |  |

# 원칙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항목 7  | 항목 7.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지표<br>번호  | 7  | 지표명   | 콘텐츠 간의 구분 |  |  |  |
| 준수  | © 이웃한 콘텐츠는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도록 구현한 경우 준수<br>것으로 인정 |   |           |  |  |  |
| 오류  | 7-1  | ○ 이웃한 콘텐츠를 아래 1가지 방법 이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br>1-1) 테두리를 이용하여 구분함<br>1-2) 콘텐츠 사이에 시각적인 구분선을 삽입하여 구분함<br>1-3) 서로 다른 무늬를 이용하여 구분함<br>1-4) 콘텐츠 배경색 간의 명도대비(채도)를 달리하여 구분함<br>1-5) 줄 간격 및 글자 간격을 조절하여 구분함<br>1-6) 기타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 |           |  |  |  |
| • 이웃한 콘텐츠를 테두리, 구분선, 서로 다른 무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되도록 제공하면 하나의 콘텐츠라고 오해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음 • 테두리의 경우 명확한 구분을 위해 배경색과의 명도 대비를 4.5:1이상으로 제공한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

항목 8-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PC웹)

| 지표<br>번호 | 8-1       | 지표명   | 키보드 사용 보장   |  |
|----------|-----------|---|---|--|
| 준수 기준    |           |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 가능  | 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오류<br>유형 | 8-1-<br>1 | ○ 키보드로 접근 및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 유형 1     |           | 디바이스 의존적 컨트롤 기능은 예외로<br>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수단에 접근<br>준수한 것으로 인정  • 스크롤 되는 콘텐츠는 키보드로도 이용  • 스크립트 사용으로 인한 키보드 함정은  •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 중 화면당 | 현실(VR), 포토샵의 붓칠(painting) 등 포인팅<br>인정하나 해당 콘텐츠를 건너뛰거나 동등한<br>및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콘텐츠가 제공되면<br>할 수 있어야 함 |  |

항목 8-2.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모바일 웹)

| 지표<br>번호 | 8-2   | 지표명   | 누르기 동작 지원  |  |  |
|----------|-------|---|--|--|--|
| 준수 기준    |       |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기 동<br>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0 2      | 8-2-1 | ○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오류<br>유형 | 8-2-2 | ○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누르<br>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세부설명     |       |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br>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보편  | UI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br>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해당 기능을 대체할<br>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적용<br>를 위해 PC웹과 같이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접근 |  |  |

항목 9.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 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9   | 지표명  | 초점 이동  |
|----------|-----|--|--|
| 준수 기준    |     | ◎ 운용 가능한 개체(링크, 버튼, 서식 등)들여<br>논리적 순서로 이동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  | - · · · · · · · · · · · · · ·  |
|          | 9-1 | ○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으며 약                                | 일관성이 없는 경우   |
|          | 9-2 | ○ 초점 또는 키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                                | 소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 오류       | 9-3 | ○ 텍스트 등 운용할 수 없는 요소에 초점(                               | 기 되는 경우  |
| 유형       | 9-4 | ○ 좌·우 쓸기(이전항목, 다음 항목)동작을 <sup>3</sup><br>으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 | 할 경우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이지 않   |
|          | 9-5 | ○ 화면에 보이지 않거나 의미 없는 개체에                                | 초점이 이동되는 경우  |
| 9-5      |     | 순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용에                                 | 레이어 팝업 또는 모달창은 가장 먼저 초점이 준수한 것으로 인정 당되는 경우 다음 초점 이동은 해당 레이어 구현하고, 레이어 팝업을 닫을 경우 레이어 넘이 복귀되도록 구현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은 오류로 간주 가 아니더라도 롤오버, 반전, 실선, 밑줄 등 인으로 인정 보기되는 이용하기 위한 초점을 의미하며 너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 일관성이 한하고 일관성 있는 순서로 이동 되지 않으면 되인 페이지의 아이디 입력 창 등 주목적에 반되게 이동하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항목 1     | 항목 10.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   |  |  |
|----------|---|--|---|--|--|
| 지표<br>번호 | 10  | 지표명 조작 가능  |   |  |  |
| 준수 기준    |   | ◎ 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웃한 컨트롤들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br>대각선 길이가 6.0mm 이상의 크기와 컨트롤의 안쪽 여백이 1픽셀 이상을 갖도록 제공한<br>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10-1  | ○ 컨트롤의 크기가 대각선으로 6.0mm 이상  | -1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02       |   | O 선트들의 크기가 대학선으로 0.01mm 이상   | 세공하시 않은 경우                              |  |  |
| 오류<br>유형 | 10-2  | ○ 링크, 사용자 입력, 기타 컨트롤의 테두리<br>않은 경우   |   |  |  |

#### 항목 1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1 지표명 응답시간 조절 ◎ 시간제한 콘텐츠는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콘텐츠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준수 기준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1-1 오류 유형 11-2 ○ 시간제한을 해제 또는 연장하는 방법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또는 정지 방법과 이에 대한 안내는 최소 20초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시간제한에 대한 연장 방법은 10배 이상의 시간을 제공해야 함 세부설명 • 경매나 실시간 게임, 듣기평가용 콘텐츠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르는 시간 조절을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인정 • 검사대상은 자동전환 페이지(Redirection page), 제한시간 연장, 제한시간 만료 경고 등이 해당됨

항목 1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12   | 지표명   | 정지 기능 제공                   |  |  |
|----------|------|---|----------------------------|--|--|
| 준수 기준    |      | <ul><li>◎ 스크롤 및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는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br/>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li></ul>  |                            |  |  |
| 02       | 12-1 |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   | 츠에 정지, 이전, 다음 기능이 없는 경우    |  |  |
| 오류<br>유형 | 12-2 | ○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마우스와 키보드 또는 터치로 제어 불기능한 경우  |                            |  |  |
| 세부설명     |      | <ul> <li>정지, 이전, 다음을 반드시 버튼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동등한 기능을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정지 기능의 경우, 마우스와 키보드 초점을 받고 있는 동안 콘텐츠가 변경되지 않아야 함)</li> <li>변경되는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li> <li>주변에 "배너 전체 목록 보기" 등의 대체 수단을 해당 페이지 안에서 제공한 경우</li> </ul> |                            |  |  |
|          |      |   | 너, 자동 변경되는 실시간 검색순위 등이 해당됨 |  |  |

항목 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 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지표<br>번호   | 13   | 지표명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  |
|--|------|---|----------------|--|
| 준수   | 기준   |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회피할 -<br>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오류<br>유형   | 13-1 | ○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존재할 경우  |                |  |
| • 깜빡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깜빡임과 번쩍임을 사전<br>세부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함<br>• 동영상 콘텐츠도 검사 대상 |      | 네공했더라도 깜빡임과 번쩍임을 사전에 알리는  |                |  |

항목 14.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14   | 지표명  | 반복 영역 건너뛰기   |  |
|----------|------|--|--|--|
| 준수       | 기준   | <ul><li>◎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뛸 수 있는 링으로 인정</li></ul>   | <b>!크를 시각적으로 구현 및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b>   |  |
| 오류       | 14-1 | ○ 건너뛰기 링크를 제공하지 않은 경   | 우  |  |
| 유형       | 14-2 | ○ 건너뛰기 링크의 제공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
| 세부       | 설명   | 반복되는 대메뉴 등이 있는 해더전환 시 동일한 반복 영역이 있는  • 부적절한 건너뛰기 링크 제공 방법  1 키보드 운용 시에도 화면에 2 href 값 연결 등이 잘못되어  3 건너뛰는(도착) 위치가 부적절  4 화면 스크롤은 되나 실제 키.  5 본문으로 바로 가는 건너뛰기 링크를 일이하여 초점을 받으면 건너뛰기 링크를 입하여 잘못되어  • 반복 영역을 건너뛰는 링크(본문 바기능을 제공하였으나 제공 방법이 4 건너뛰기 링크가 연결이 잘못되어  • 건너뛰는(도착) 위치가 부적절하게  • 화면 스크롤은 되나 실제 키보드 조판단  • 본문으로 바로 가는 건너뛰기 링크 것으로 판단  • 건너뛰기 링크가 키보드 운용 시에 않은 것으로 판단  • 모바일 웹의 경우 임의 접근 방식( | 보이지 않게 제공 된 경우<br>동작하지 않는 경우<br>불하게 지정된 경우<br>보드 초점은 이동되지 않는 경우<br>  링크가 최상단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  |

항목 15.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지표<br>번호     | 15   | 지표명 제목 제공   |   |  |  |  |
|--------------|------|---|---|--|--|--|
| 준수           | 기준   | ◎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 팝업창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 15-1 | ○ 페이지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15-2 | ○ 페이지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오류           | 15-3 | ○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유형           | 15-4 | ○ 프레임 요소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15-5 | ○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15-6 | ○ 콘텐츠 블록에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15-6<br>세부설명 |      | <ul> <li>부적절한 페이지 제목의 예시</li> <li>1 페이지 내용과 다른 제목을 제공한 경우</li> <li>2 동일한 페이지 제목이 존재하는 경우</li> <li>3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함에도 상위 범주로 제목을 제공한 경우</li> <li>4 페이지 제목에 2개이상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사용한 경우</li> <li>단, 페이지 제목 분류가 더 가능하더라도 한 페이지로 구성된 탭메뉴와 같이 사실한 페이지인 경우 상위 범주로 페이지 제목을 제공해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li> <li>내용 또는 기능이 없는 프레임에도 "빈프레임", "내용없음"과 같이 title을 제공해야</li> <li>콘텐츠 블록 제목은 헤딩(Headings) 요소 사용 및 레벨 구조화를 권장하되, 다요소를 사용한 구분 또는 WAI-ARIA 기법 등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li> <li>콘텐츠 블록 제목은 display:none;, visibility:hidden;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숨겨하는 경우 posi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함</li> </ul> | 함 |  |  |  |

항목 16.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제공해야 한다.

| 지표<br>번호 | 16   | 지표명                              | 적절한 링크 텍스트               |
|----------|------|----------------------------------|--------------------------|
| 준수 기준    |      | ◎ 링크 텍스트의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오류<br>유형 | 16-1 | ○ 목적이나 용도를 알기 어려운 링크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
| 세부설명     |      | 논리적 순서나 맥락을 통해 이해할 :             | 테공한 경우 주변 맥락을 통해 링크의 목적을 |

## 원칙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항목 17.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0 1 = 0 1 = 10 1 |      |   |   |            |                                |     |
|--|------|---|---|------------|--------------------------------|-----|
| 지표<br>번호   | 17   |   | 지표명                                     |            | 기본 언어 표시                       |     |
| 준수 기준  |      | ◎ 기본 언어 표시 속성을 사용하여 언어를 명시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오류   | 17-1 | ○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유형   | 17-2 | ○ 문서 타입에 맞는 기본언어를 적절하지 않게 명시한 경우          |   |            |                                |     |
|  |      |   | 기본 언어 표시는 Doctype에 맞<br>된 언어 코드를 사용해야 함 | 는 속성       | 성을 사용하여 ISO 639-1에서 지정한 두      | 글자로 |
| 세부   | 설명   | HTML 4.01 / HTML 5                        |   |            | <html lang="ko"></html>        |     |
|  |      |   | XHTML 1.0                               | < <b>!</b> | ntml xml:lang="ko" lang="ko" > |     |
|  |      |   | XHTML 1.1                               |            | <html xml:lang="ko"></html>    |     |
|  |      |   |   |            | -                              |     |

# 항목 18.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지표<br>번호 | 18   | 지표명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  |
|----------|------|--|--|--|
| 준수 기준    |      |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되   | 지 않도록 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18-1 | ○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 측하지 않은 새 창이 열리는 경우   |  |
| 0 =      | 18-2 | ○ 웹 페이지 시작 시, 새 창 또는 화면을 기   | 가리는 레이어 팝업을 제공하는 경우  |  |
| 오류<br>유형 | 18-3 |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초점 변화나  | 기능이 발생되어 맥락상 불편을 주는 경우   |  |
|          | 18-4 | ○ 입력 서식의 값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현재 페이지의<br>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   |  |  |
| 세부설명     |      | 초점 이동, 선택 및 입력 방해 등이 별  • 텍스트 입력 서식 간 자동 초점 이동<br>돌아 갈 수 있거나 수정 방법을 제공함  • 오류정정을 위한 자동 초점 변경은 예  • <a target="_blank">로만 새 창을 알함  • 사용자 운용에 의해 레이어 팝업을 열었으면 감점  ► '닫기'의 기능이 '확인', '취소' 등으로</a> | 기능(autofocus)은 이전 서식으로 초점을 되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의 의원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의 하면을 가리는 경우 '닫기' 기능을 제공하지 로 제공되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항목 1     | 항목 19. (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   |  |  |  |
|----------|--|---|---|--|--|--|
| 지표<br>번호 | 19                                       | 지표명 콘텐츠의 선형화  |   |  |  |  |
| 준수       | 기준                                       | ◎ 콘텐츠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선형화되   | 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오류       | 19-1                                     | ○ 콘텐츠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제공하지   | 않아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  |  |
| 유형       | 19-2                                     | ○ 콘텐츠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제공하지   | 않아 주종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  |  |  |
| 세부       | 설명                                       | <ul> <li>제목과 내용 사이에 관련 없는 콘텐트 기능으로 연결했다면 논리적인 순서 탭 내용들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제목되오류 아님)</li> <li>계층 구조가 존재하는 콘텐츠(예: 2단</li> </ul> | 호를 포함하고 있다면 17-1 유형의 오류<br>호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제목과 내용을 앵커<br>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예: 탭 링크 목록과<br>과 내용이 앵커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br>·계 이상의 깊이를 가진 메뉴)에 계층 구조를<br>li, ol>li>ol>li, hx+ul, hx+ol, dt+dd 등 이에 |  |  |  |

| 항목 20.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   |                   |  |  |  |
|--|------|---|-------------------|--|--|--|
| 지표<br>번호                                   | 20   | 지표명   | 표의 구성             |  |  |  |
| 준수 기준 © 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20-1 | ○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20-2 | ○ 표의 제목과 요약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                   |  |  |  |
| 오류<br>유형                                   | 20-3 | ○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구분한 경우  |                   |  |  |  |
|  | 20-4 | ○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headers, id 속성을 통해 제목 셀과 내용 셀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20-5 | ○ 표의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중첩 표(표 안의 표)를 넣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   |                   |  |  |  |
| 세부설명                                       |      | <ul> <li>데이터테이블의 제목과 요약정보는 문서타입에 맞는 방법으로 모두 제공해야 하며, 제목과 요약정보는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li> <li>데이터 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 숫자, 그림 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함</li> <li>HTML5에서 summary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caption> 요소 안에 제목을 포함하여 표의 요약, 구조, 탐색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caption></li> <li>원칙적으로 <caption>요소와 summary 속성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 중 하나 이상 적절히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caption></li> <li>제목 셀 및 내용 셀의 다단, 병합 등 복잡한 표를 제공 시 scope 속성을 사용하여 제공하면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 권장</li> </ul> |                   |  |  |  |

| • 데이터테이블은 자료들(텍스트, 숫자, 그림 등)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배치용(레이아웃용) 테이블은 화면 배치를 위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표의 형식을 제거하고 선형화했을 때 이해 가능한 경우에 해당                           |
|--|
| <ul> <li>배치용 테이블에는 &gt;, <caption> 요소, summary 속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caption></li> <li><caption>요소는 ddisplay:none; 등과 같이 화면낭독기에서 읽히지 않는 방식으로 숨기지 않아야 하며, 숨겨야 하는 경우 posi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함</caption></li> </ul> |

| 항목 2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                                      |        |  |
|--|---|--------------------------------------|--------|--|
| 지표<br>번호                                   | 21  | 지표명                                  | 레이블 제공 |  |
| 준수 기준                                      |   | ◎ 입력 서식에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오류   | 21-1       ○ <input/> , <textarea>, &lt;select&gt; 요소에 1:1 대응하는 &lt;label&gt;요소 또는 title 속성을 제공하지 않거나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lt;/td&gt;&lt;/tr&gt;&lt;tr&gt;&lt;td colspan=4&gt;유형 21-2 ○ &lt;lable&gt; 텍스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lt;label&gt; 생략 후 title 속성만 사용한&lt;/td&gt;&lt;/tr&gt;&lt;tr&gt;&lt;td&gt;&lt;/td&gt;&lt;td&gt;21-3&lt;/td&gt;&lt;td colspan=4&gt;○ &lt;input&gt;의 id와 &lt;label&gt;의 for가 다르거나, 페이지 안에 같은 id가 있는 경우&lt;/td&gt;&lt;/tr&gt;&lt;tr&gt;&lt;td colspan=2&gt;세부설명&lt;/td&gt;&lt;td colspan=3&gt;&lt;ul&gt;     &lt;li&gt;&lt;input type="image   hidden   submit   button   reset"&gt; 요소의 &lt;label&gt; 또는 title 속성 사용은 필수가 아니므로 오류 유형 19-1 으로부터 예외를 적용해야 함&lt;/li&gt;     &lt;li&gt;단, 화면상에 연결할 레이블이 표현되는 경우는 반드시 &lt;label&gt;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lt;/li&gt;     &lt;li&gt;서식 요소가 아닌 요소로 서식 모양 및 기능을 구현한 경우 title 속성 WAI-ARIA 등을 사용하여 레이블 역할을 하도록 구현해야 함&lt;/li&gt;     &lt;li&gt;&lt;select&gt; 요소의 첫 번째 &lt;option&gt;이 레이블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라도 &lt;label&gt; 또는 title 속성을 통해 레이블을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lt;/li&gt; &lt;/ul&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textarea> |                                      |        |  |

항목 2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지표 번호 22 오류 정정 지표명 준수 기준 ◎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입력 오류 발생 시, 오류 원인 및 내용을 적절한 설명 텍스트로 알려주지 않는거나 적 22-1 절하지 않은 경우 오류 22-2 ○ 입력 오류 발생 시,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형 22-3 ○ 오류 정보 확인 시, 해당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22-4 ○ 입력 오류 발생 시 입력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경우 • 오류 정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은 ajax 등을 사용해 각 서식 입력 시 마다 정보를 주거나, 버튼을 제공하는 방법, 최종 전송 시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 더라도 오류가 난 입력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나 기능을 제공해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오류가 있는 곳에만 오류 표시를 하면 전맹이나 저시력자는 오류가 난 곳에 도달 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오류의 내용을 먼저 텍스트로 세부설명 설명해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가 난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고, 오류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함 • 은행의 뱅킹과 같이 입력 값의 형식, 범위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고 이미 전송된 값에 대하여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처리 가능 여부를 검증 받는 경우는 예외 (단, 입력 중인 화면에서 값의 누락, 형식 및 범위의 유효성 오류 등은 정정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함)

#### 워칙 4. 견고성(Robust)

항목 23.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23   | 지표명  | 마크업 오류 방지 |  |  |  |
|----------|------|--|-----------|--|--|--|
| 준수 기준    |      | ◎ 마크업 언어 요소의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없이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           |  |  |  |
|          | 23-1 | ○ 태그의 열고 닫음 오류   |           |  |  |  |
| 오류<br>유형 | 23-2 | ○ 태그의 중첩 오류  |           |  |  |  |
|          | 23-3 | ○ 중복 선언된 속성 오류   |           |  |  |  |
|          | 23-4 | ○ 한 페이지 안에 동일한 ID 값이 존재하는 경우                               |           |  |  |  |
| 세부설명     |      | • 위에 언급된 항목 이외의 표준문법 오류 이외에도 모두 준수하도록 권장                   |           |  |  |  |

항목 24.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 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지표<br>번호                        | 24   | 지표명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
| 준수 기준 <b>◎ 웹 애플리케이션의 것으로 인정</b> |      |  | 누하였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  |
| 오류<br>유형                        | 24-1 | ○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가<br>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게 제공한 경우 |                          |  |
| 세부설명                            |      |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체 접근성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br>원칙에 따른 접근성 준수 기준을 의미   |                          |  |

# 2. 사용자심사

## □ 사용자심사 합격 기준

- 최종 결과 : 모든 장애 유형의 과업 성공률 100%인 경우 합격
- 과업별 결과 : 15분 이내 과업 수행에 성공해야 함
  - 과업 수행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와 불편 사항 또는 권고 사항만 있는 경우에만 합격으로, 결국 모든 과업이 성공해야 최종 합격이 됨
  - 모바일 웹 접근성에서 과업 수는 PC웹 기준의 50%(단, 2종의 OS에서 테스트)
- 모바일 운영체제별 과업 결과 : i-OS와 Android에서 수행하고 임의접근 방식으로 평가하여 15분 이내 성공해야 함
  - 사용자심사에서 '터치하여 탐색'은 순차접근이 아닌 임의접근 방식으로 심사 <과업 결과 표시 및 기준>

| 결과 구분  | 과업 기준 | 비고                        |
|--------|-------|---------------------------|
| 하면(이   | 성공(O) | 문제없이 수행 가능                |
| 합격(O)  | 권고(O) | 수행 가능하나 불편 사항 또는 권고 사항 있음 |
| 불합격(X) | 실패(X) | 오류가 있어 과업 수행이 불가능         |

## □ 심사 장애 유형 및 특성

| 장애유형                | 등급 및<br>조건       | 구분   | 환경 및 특성                        | 비고  |
|---------------------|------------------|------|--------------------------------|---|
| 전맹                  |                  | PC 웹 | PC화면 낭독프로그램 사용,<br>키보드만 사용     | 본 가이드에서 정한 2가지 화면<br>낭독기 중 중 하나이상 성공<br>해야 인정 |
| 시각장애                |                  | 모바일웹 | 모바일 스크린리더 사용,<br>모든 손가락 사용     | Voiceover, Talkback 등으로<br>임의터치방식 진행          |
| 저시력                 | 중증<br>장애인에<br>준함 | PC 웹 | 확대 및 고대비 기능 사용,<br>마우스, 키보드 사용 | 화면 확대, 반전, 고대비 등 사용                           |
| 시각장애                |                  | 모바일웹 | 확대 및 고대비 기능 사용,<br>모든 손가락 사용   | 와인 확대, 인선, 고대미 중 사용                           |
|                     | 당지) 또는           | PC 웹 | 키보드만 사용                        | -   |
| 지체(상지) 또는<br>뇌병변 장애 |                  | 모바일웹 | 하나의 터치수단 사용<br>(예: 한 손가락만 사용)  | 터치방식으로 진행 또는 화면<br>낭독기 환경에서 대체 수단<br>인정       |

# □ 사용자심사 지표

| 번호 | 과업 예시<br>(사이트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 설정) | 성공률 산정 방식                               |
|----|---------------------------------|---|
| 1  | 회원가입을 해보세요.                     |   |
| 2  |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해보세요.                | <u>성공한과업</u><br>심사대상과업 × 100            |
| 3  | 회원 정보를 수정해보세요.(주소, 전화번호)        |   |
| 4  | 사이트맵을 이용하여 민원업무서식을 찾아보세요.       | 3명의 사용자심사원이 각 과업  <br>  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공 |
| 5  |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하여 첫 번째 게시물을 읽어보세요.   |   |